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38
----------	------

발의연월일 : 2017. 2. 22.

발의자 : 우원식 · 송옥주 · 이용득  
윤종오 · 최인호 · 이학영  
인재근 · 김현권 · 이원욱  
김영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회와 관계된 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이하 “헌정회”라 한다)를 보호·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헌정회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 그 밖의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제3조(국·공유재산의 대부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을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헌정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계획등의 승인) ① 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헌정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헌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결산보고등) ① 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헌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잔여 재산의 귀속) 헌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 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準用)한다.

제8조(과태료) 제6조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第1條(目的) 이 法은 社團法人 大韓民國憲政會(이하 “憲政會”라 한다)를 보호·육성함으로써 民主憲政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u></p> <p><u>第2條(補助金의 교부)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憲政會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에 필요한 資金과 費用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補助金을 교부할 수 있다.</u></p> <p><u>②憲政會는 개인·法人 또는 團體로부터 金錢 기타 財產의 出捐을 받을 수 있다.</u></p> <p><u>第3條(國·公有財產의 貸付등)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憲政會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公有財產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無償으로 貸付·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u></p>	<p><u>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이하 “헌정회”라 한다)를 보호·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u></p> <p><u>② 헌정회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 그 밖의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u></p> <p><u>제3조(국·공유재산의 대부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u></p>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償으로 貸付·사용·收益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節次 등은 당해 財產의 管理廳과 憲政會와의 契約으로 정한다.

第4條(事業計劃등의 승인) ① 憲政會는 每 會計年度의 事業計劃書 및 豫算書를 작성하여 國會議長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憲政會는 國會議長의 승인을 얻어 憲政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第5條(決算報告등) ① 憲政會는 每 會計年度의 歲入·歲出決算報告書에 당해 年度의 事業實績을 첨부하여 다음 年度 3月末까지 國會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規定한 歲入·歲出決算報告書에는 國會議長이 지정하는 公認會計士의 監查報告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6條(類似名稱의 사용금지) 이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헌정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계획등의 승인) ① 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헌정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헌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결산보고등) ① 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憲政會가 아닌 者는  
社團法人 大韓民國憲政會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7條(殘餘財產의 歸屬) 憲政會가  
解散하는 경우에 殘餘財產의  
處分은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관한法律 第13條의 規定을 準  
用한다.

第8條(過怠料) 第6條에 위반한 者  
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  
한다.

법에 따른 헌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잔여재산의 귀속) 헌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 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운  
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  
용(準用)한다.

제8조(과태료) 제6조를 위반한 자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